

[] **운용경험 기반 승인방식**
[] **속성 승인방식** } **회항시간 연장운항승인 신청서**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 쪽)

| | | | |
|------|------|------|---|
| 접수번호 | 접수일시 | 처리기간 | 운용경험 기반 승인방식 : 20일 속성 승인방식 : 180일 |
|------|------|------|---|

| | | |
|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신청인 | 성명 또는 명칭 | 생년월일 |
| | 주소 | (전화번호:) |

면허취득·등록일(또는 예정일)

운항개시예정일

운항예정지역(예정구간, 노선, 공항 명시)

착륙이 가능한 공항명

운항 예정 비행기(형식·등록부호·발동기의 형식 및 모델명)

승인 희망 최대 회항시간

확인 비행 희망일

「항공안전법」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제4항에 따라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귀하

| | | |
|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첨부서류 | 「항공안전법」 제77조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| 수수료 「항공안전법 시행규칙」 제321조에서 정한 수수료 |
|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